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변창흠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과 공제조합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,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며, 연임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,

운영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는 사항 중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0. 11. 30. ~ 2021. 1. 11., 2021. 3. 2. ~ 3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 1건(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)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총회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직접·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9명 이하의 위원
제5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8명 이상 13명 이하”를 “9명 이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”를 “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51조제4항 중 “2명”을 “1명”으로, “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·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.

제51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운영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려

는 때에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고 그 밖에 법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⑧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해당 위원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(직무를 수행할 때에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)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⑨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1조제2항제4호·제5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 구성,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) ① 공제조

합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을 새로 선출하거나 위촉해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은 제외하고 선출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는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.

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하고, 종전의 제5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.

1. 임기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: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선출한 날의 전날

2. 임기만료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: 2021년 12월 31일

3. 임기만료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: 2022년 5월 31일

④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두

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운영위원회) ① (생 략)	제51조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.
1.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 하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 원	1. 총회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직접 · 무 기명투표로 선출하는 9명 이 하의 위원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4. 당해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 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	<삭 제>
5. 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	<삭 제>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위촉하는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	6. ----- ----- ----- 9명 이하 ----- -----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	③----- ----- 2년으로 하며, 한 차 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

<단서 신설>

④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. <후단 신설>

⑤·⑥ (생략)

<신설>

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-----
----- 1명-----
-----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·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.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⑦ 운영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
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고 그 밖에 법 제56조에 따른 공제조

<신 설>

<신 설>

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
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
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
원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⑧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
회의 안건이 해당 위원과 이해
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(직무를
수행할 때에 사적 이해관계가
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
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
경우를 말한다)에는 운영위원회
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⑨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
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
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512